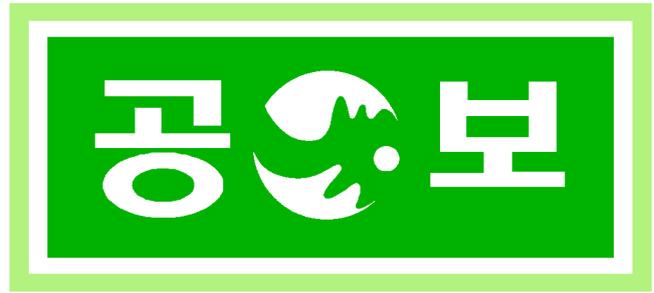


울산광역시북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기 관	기 관 의 장



제 945 호 2015. 5. 1. (금)

규 칙

- 울산광역시 북구 규칙 제450호[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규칙 일부개정규칙] 2
- 울산광역시 북구 규칙 제451호[울산광역시 북구 사무 전결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 10

훈 령

- 울산광역시 북구 훈령 제212호[울산광역시 북구 공무원 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 13
- 울산광역시 북구 훈령 제213호[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배정 규정 일부개정규정] 17

안 내	○북구 전자공보는 매주 월요일 발행되오니 공보게재 의뢰는 전주 금요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긴급한 내용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북구 전자공보 확인방법 ☞북구 홈페이지(www.bukgu.ulsan.kr)→행정정보→알림마당→북구공보
--------	--

회 람								
--------	--	--	--	--	--	--	--	--

발행: 울산광역시북구 편집:기획홍보실(☎241-7126 행정7126)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박천동 

2015년 5월 1일

울산광역시 북구 규칙 제450호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규칙 일부개정규칙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자치행정과, 건설과 및 안전정보과의 분장사무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구분청 실·과 사무분장표

부 서 명	분 장 사 무
자치행정과	1. 행정서비스현장 운영에 관한 사항 2. 선거 및 국민투표에 관한 사항 3. 구청장 동 방문 및 간담회 개최에 관한 사항 4. 명절 연휴 종합대책 추진에 관한 사항 5. 국가기반체계 보호에 관한 사항 6. 새마을금고에 관한 사항 7. 새마을소득특별자금 운영에 관한 사항 8. 친절배가 운동 시책추진에 관한 사항 9. 기관단체 협의회에 관한 사항 10. 주민조례제정·개폐에 관한 사항 11.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진상 및 피해신고서 접수와 사실 확인에 관한 사항 12. 민주화운동 관련자 사실조사에 관한 사항 13. 6.25전쟁 남북피해신고에 관한 사항 14. 행정사 업무에 관한 사항 15. 행정구역의 명칭·위치 및 구역의 조정에 관한 사항 16. 동주민센터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 17. 통반 조직운영 및 민간인 표창에 관한 사항 18. 동 예산 운영 및 동 행정 업무 종합조정(동시달 문서통제 등)에 관한 사항 19. 적십자 회비 모금에 관한 사항 20. 인감증명 및 주민등록관리에 관한 사항 21. 주민만남의 날 행사운영에 관한 사항 22. 교육경비 지급 및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23. 방범용 CCTV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24. 주민참여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 25. 주민참여리더 발굴, 육성, 교육에 관한 사항 26.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27.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지도에 관한 사항 28. 문화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해당 동주민센터) 29. 각종 여론 및 동향관리 30. 시민단체 신설,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 31.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육성에 관한 사항 32. 바르게살기운동 업무지원에 관한 사항 33.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의에 관한 사항 34. 한국자유총연맹에 관한 사항 35. 자율방범대 운영에 관한 사항

부 서 명	분 장 사 무
자치행정과	36. 해병대 전우회 운영에 관한 사항 37. 타 과에 속하지 아니한 사회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38. 북한 이탈주민 보호·관리에 관한 사항 39. 추억의 학교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40. 커뮤니티비즈니스 업무추진에 관한 사항 41. 커뮤니티비즈니스 중간조직 신설 육성 42. 지역자원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사항 43. 지역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44. 평생학습 기본계획 수립 및 정책에 관한 사항 45. 평생학습 네트워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6. 평생학습 문화 활성화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7. 평생학습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8. 세대공감창의놀이터 운영 및 시설관리에 관한 사항 49. 세대공감창의놀이터 상설 및 기획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50. 세대공감창의놀이터 자원봉사자 운영에 관한 사항 51. 세대공감창의놀이터지기 양성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52. 세대공감창의놀이터 어린이자문단 운영에 관한 사항 53. 세대공감창의놀이터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사항

부 서 명	분 장 사 무
건설과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건설행정의 종합 및 기획에 관한 사항 2. 국·공유재산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 도로·하천·구거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4. 건설기계조종사 면허관리에 관한 사항 5. 전문건설업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시설등원(일반도지, 건설업체, 증기정비업체)에 관한 사항 7. 건설사업용지의 매수, 수용 및 지장물 보상에 관한 사항 8. 건설사업에 따른 취득재산 이전등기에 관한 사항 9. 소유사실확인원 및 보상사실관계확인서 발급에 관한 사항 10. 전문건설업에 관한 사항 11. 노점상 단속 및 정비에 관한 사항 12. 노상적치물 단속 및 정비에 관한 사항 13. 가로등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14. 보안등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15. 도로건설사업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16. 유선 및 도선 업무 안전관리 및 지도에 관한 사항 17. 도로 및 건설공사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18. 도목, 건설공사의 시행 및 지도에 관한 사항 19. 20미터 미만 도로의 노선인정과 폐지변경에 관한 사항 20. 20미터 미만 도로 노면 및 전체도로 시설물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21. 도로의 안내표지판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22. 도로, 교량 설계 및 시공 감독에 관한 사항 23. 공공시설공사의 전기관련 공사감독에 관한 사항 24. 도시계획시설 중 도로의 매수청구에 대한 매수여부 결정 및 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 25. 자전거도로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26. 보행자전용도로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27. 도로관리심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28. 도로굴착 및 복구에 관한 사항 29. 공동구 설치 및 점용료 등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30. 공동구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 31. 도로 및 가로 정비(도로제설포함)에 관한 사항 32. 건설공사용 자재 및 기구 출납보관에 관한 사항 33.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공사설계 시공감독에 관한 사항 34. 공공하수도 설치, 개축 및 수선공사에 관한 사항 35. 하수증발 측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부 서 명	분 장 사 무
건설과	36. 하수 수질감사에 관한 사항 37. 공공하수도 비용에 관한 사항 38. 하수사용 계량기 설치 및 교체에 관한 사항 39. 하수도 사용료 부과징수 및 집계에 관한 사항 40. 지하수 개발, 계측기 설치 및 교체에 관한 사항 41. 배수설비설치신고 및 준공감사에 관한 사항 42. 하천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43. 지방2급 하천에 관한 허가 사항 44. 공유수면 관리에 관한 사항 45. 생활민원기동대 운영에 관한 사항 46. 생활불편 스마트신고 민원에 관한 사항 47. 도로보수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

부 서 명	분 장 사 무
안전정보과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재해예방 및 재해응급대책의 추진에 관한 사항 2. 재해복구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3. 방재계획의 수립 집행에 관한 사항 4. 방재훈련의 실시에 관한 사항 5. 재해대책본부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6. 해빙기 안전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수방단의 조직 운영에 관한 사항 8. 재해발생시 경계구역의 설정에 관한 사항 9. 재해방지를 위한 출동명령 등 행정조치에 관한 사항 10. 수해발생예상시설 점검 및 조치에 관한 사항 11. 지역단위 재난예방 및 안전관리수립 집행에 관한 사항 12. 구 안전대책위원회 및 사고대책본부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13. 재난상황종합관리 및 평시보고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14.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긴급구조·구난기관간 협조지원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 15. 재난대비물자자원장비파악 및 재난단계 규모유형별 동원계획 수립 운영에 관한 사항 16. 시설물·건축물 안전관리 및 재난예방계획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17. 교량·터널·지하도·지하철 등 공공용 또는 공용시설물의 안전관리 지도에 관한 사항 18. 도시가스·항만·화학물질·원자력 등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협약) 19. 아파트·연립주택 등 공동주택과 대형건축물·공공기관·지하 건축물 등 다중이용 건축물의 안전관리지도에 관한 사항 20. 구 산하기관(부서)의 재난관리행정 지도에 관한 사항 21. 사회적 재난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의 예방행정에 관한 사항 2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총괄사무(통계, 현황보고, 행정자치부와 청구역할 등) 23. 재난안전관리정책 총괄·조정에 관한 사항 24. 안전문화 전반에 관한 사항 25.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26. 직장민방위 및 군부대 지원에 관한 사항 27. 민방위계획 작성에 관한 사항 및 민방위협의회 설치에 관한 사항 28. 직장 민방위 편성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29. 직장민방위대의 편성신고 수리와 그 지휘감독에 관한 사항 30. 민방위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및 민방위 기술지원대의 편성 관리에 관한 사항 31. 주민신고망 조직 운영에 관한 사항 및 시범 민방위대 육성에 관한 사항 32. 민방위대 교육 훈련에 관한 사항 및 총무계획의 지침 작성과 조정 통제에 관한 사항 33. 사회복무요원관리에 관한 사항 34. 민방위 비상 급수·대피 시설 관리 35. 방사능 방재에 관한 사항

부 서 명	분 장 사 무
안전정보과	36. 행정 정보화사업 총괄·조정예 관한 사항 37. 지역 정보화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38. 정보화 대상 업무 발굴 및 전산 개발에 관한 사항 39. 정보화사업 협의 조정 및 심의에 관한 사항 40. 정보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41. 시군구행정종합정보시스템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42. 은나라시스템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43. 홈페이지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44. 행정정보시스템 도입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45. 전산실 및 전산자료 관리에 관한 사항 46. 행정업무용 전산장비, S/W 보급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47. 정보화교육, 전산교육장 관리에 관한 사항 48. 전산보안장비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49. 방송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50. 구내 정보통신망(LAN, WAN)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51. 통신에 대한 종합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52. 팩시밀리 운영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53. 행정통신시설 운영·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54. 통신 보안 관리에 관한 사항 56. 각종 통신회선(행정통신·전화회선 등)의 통합 관리에 관한 사항 57. 구 분청 및 산하기관의 통신개발 계획·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58. CCTV 총괄관리에 관한 사항 59. 부서별 CCTV 사업 사전협의 및 검토에 관한 사항 60. CCTV 통합관제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1. CCTV 보안업무에 관한 사항 62. CCTV 통합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63. CCTV 영상제공 민원업무 처리에 관한 사항 64. 방범/어린이보호 CCTV 설계 및 공사감독 65.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에 관한 사항 66. 정보통신공사 착공전 설계도 확인 67. 공공시설 통신분야 공사감독 68. ~ 69. <삭제>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가. 도로보수업무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토목담당의 공무원과 생활민원담당 공무원의 통합운영하고,
- 나. 토목담당과 생활민원담당을 한 부서 내 배치함으로써 업무의 연계·협조체계를 강화하고자 관련 자치법규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부서변경 : 안전정보과 생활민원담당 → 건설과 생활민원담당
 - 건설과 담당 직제 : 건설행정 - 토목 - 치수 - 생활민원
 - 도로보수 담당 인력(공무직) 통합운영하여 탄력적으로 인력을 운영하고, 상시 가동인력 확보
 - ※ 토목담당 공무원 4명 + 생활민원담당 공무원 4명 = 8명
- 나. 분장사무 조정 : [별표] 구분청 설·과 사무분장표 개정
 - 건설과 생활민원담당 분장사무 추가
 - 안전정보과 생활민원담당 분장사무 삭제
 - 건설과 내 분장사무 조정
 - 도로보수업무 : 토목담당 → 생활민원담당
 - 도로보수 공무원 관리 및 운영 : 토목담당 → 생활민원담당

울산광역시 복구 사무 전결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박천동



2015년 5월 1일

울산광역시 복구 규칙 제451호

울산광역시 복구 사무 전결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

울산광역시 복구 사무 전결 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사무관리규정」 제16조제2항”을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으로 한다.

별표 1 중 기획홍보실 단위업무란의 제54호, 자치행정과 단위업무란의 제29
호를 별지와 같이 하고, 건설과 단위업무란에 제29호를 별지와 같이 신설
하며, 안전정보과 단위업무란의 제51호를 삭제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세부결재 한계(제4조제1항 관련)

□ 기획홍보실

단 위 업 무	세 부 사 무 명	기안 및		전결구분		구청장결재
		실무자	담당	실·과장	국장	
54. 계약심사	가. 계약심사 결과보고	기안		○		
	나. 계약심사 추진실적 보고	기안		○		
	다. 계약심사 결과 통보	기안		○		
	라. 계약심사 요청	기안		○		

○ 자치행정과

단 위 업 무	세 부 사 무 명	기안 및		전결구분		구청장결재
		실무자	담당	실·과장	국장	
29. 국민운동단체 운영	가. 국민운동교육 입소	기안		○		
	나. 새마을지회 보조금 지급	기안		○		
	다. 새마을 관련 업무 일반	기안		○		
	라. 바르게 살기 보조금 지급	기안		○		
	마. 바르게 살기 관련 업무 일반	기안		○		
	바. 국민운동 단체 행사 일반	기안		○		
	사. 보조사업 변경 등에 관한 사항	기안				○
	아. 새마을 지도자 장학금 지급	기안		○		
	자. 한국자유총연맹 관련 업무 일반	기안		○		

○ 건설과

단 위 업 무	세 부 사 무 명	기안 및		전결구분		구청장결재
		실무자	담당	실·과장	국장	
29. 생활민원기동대 운영에 관한 사항	가. 운영 종합계획 수립	기안				○
	나. 운영관리	기안		○		
	다. 민원처리 일반(접수·관리)	기안		○		
	라. 운영결과 평가 및 분석보고	기안				○

○ 안전정보과

단 위 업 무	세 부 사 무 명	기안 및		전결구분		구청장결재
		실무자	담당	실·과장	국장	
51. <삭제>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가. 도로보수 업무의 안전성 및 효율성을 높이고자 공무원들을 통합운 영함에 따라 생활민원담당을 안전정보과에서 건설과로 조정하여 단 위업무를 추가·삭제하고,
- 나. 계약심사업무의 세부결재 한계를 하향 조정하여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관련 자치법규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생활민원담당 부서이동(안전정보과 → 건설과)에 따른 단위업무 조정
 - 생활민원기동대 운영에 관한 사항 : 건설과 추가, 안전정보과 삭제
- 나. 세부결재 한계 조정 : 계약심사업무 구청장 결재 → 기획홍보실장 전결
 - ※ 계약심사업무는 하루 평균 1.9건으로 일상적인 업무이며, 사업의 조기발주 및 신속한 업무수행을 위해 세부결재 한계 하향 조정 필요

울산광역시 북구 공무원 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을 이에 발령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박천동 

2015년 5월 1일

울산광역시 북구 훈령 제212호

울산광역시 북구 공무원 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

울산광역시 북구 공무원 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직종의 구분) ① 공무원에 대한 직종의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사무실무원 : 사무실에서 지속적으로 근무하며 행정사무보조 또는 민원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
 - 2. 전문실무원 : 출장과 내근을 겸하거나 업무수행시 전문자격증을 요하는 등 작업강도가 비교적 높은 인력
 - 3. 시설관리원 : 특정한 근무장소 없이 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하거나 전문 기술을 요하는 등 작업강도가 가장 높은 인력
 - 4. 환경미화원 : 도로·가로청소, 폐기물 수거·처리 등 환경미화 업무에 종사하는 인력
 - 5. 청원경찰 : 「청원경찰법」에 따라 채용된 경비업무에 종사하는 인력
-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인력은 세입·세출, 보상업무, 회계장부관리, 금전취급, 기록검사 등 책임을 요하는 사무 및 정규직 공무원이 수행해야 하는 사무에 채용할 수 없다.

제7조 중 “125명”을 “118명”으로 한다.

별표 공무원직의 정원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공무직의 정원표(제7조 관련)

1. 공무직의 정원

부 서 별	총계	소계	사 무 실무원	전 문 실무원	시 설 관리원	환 경 미화원	청 원 찰
합 계	118	62	0	10	52	50	6
총 무 과	6	6		5	1		
문화체육과	7	7			7		
도 서 관 과	7	7			7		
세 무 과	1	1			1		
민원지적과	2	2		1	1		
복지지원과	5	5		1	4		
농 수 산 과	1	0					
환경위생과	1	1			1		1
환경미화과	51	1			1	50	
건 설 과	12	10			10		2
도시행정과	2	0					2
공원녹지과	2	2			2		
교통행정과	5	5			5		
건축주택과	3	2			2		1
보 건 소	10	10			10		
농 소 2 동	1	1		1			
농 소 3 동	2	2		2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가. 도로보수 인력(공무직)의 업무상 안전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행정기구 설치 규칙 개정에 따른 배치부서 조정
- 나. 음식물류 폐기물 민간위탁 등에 따른 정원 삭감

2. 주요내용

가. **공무직 분류 체계(명칭) 현실화**

- 임금협약에 따른 직군 명칭 변경
- 현업실무원, 도로보수원 → 사무실무원, 전문실무원, 시설관리원

나. **공무직 배치부서 조정**

- 행정기구 개편(2015. 5. 1. 시행) : 도로보수업무 담당 인력 통합 운영
 - 생활민원담당(공무직 4명) : 안전정보과 → 건설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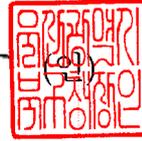
다. **공무직 정원 감원 : 125명 → 118명(△7명)**

- **환경미화원 정원 감원 : 56명 → 50명(△6명)**
 - 환경미화원 현원(50명)에 맞춰 인력 감축
 - 음식물류 폐기물처리 민간위탁에 따른 업무량 감소
 - ▶ 환경미화원 8명 : 가로환경 청소에 투입하여 부족인력 해소
- **청원경찰 정원 삭감 : 7명 → 6명(△1명)**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배정 규정 일부개정규정을 이
에 발령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박천동



2015년 5월 1일

울산광역시 북구 훈령 제213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배정 규정 일부개정규정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배정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북구 본청 지방공무원 정원표(제2조제1항 관련)

구분	직종	직급	정원	직렬	
본청 합계			405		
기획홍보실	계		24		
	일반직	소계	24		
		5급	1	행정1	
		6급	5	행정5	
		7급	10	행정7, 행정/시설1, 시설1, 행정/임기제 행정1	
		8급	7	행정4, 행정/임기제 행정1, 행정/보건1, 직산1	
9급	1	행정1			
행정지원국	국 합계		157		
	총무과	계		35	
		정무직		1	구청장
		일반직	소 계	33	
			3급	1	부이사관1
			4급	1	서기관1
			5급	1	행정1
			6급	7	행정5, 운전1, 기계운영1
			7급	10	행정8, 행정/시설1, 운전1
			8급	10	행정6, 행정/임기제 행정1, 운전3
			9급	3	행정2, 공업1
		별정직	소 계	1	
			6급상당	1	비서1
행정지원국	자치행정과	계		15	
		일반직	소계	15	
			5급	1	행정1
			6급	4	행정3, 행정/임기제 행정1
			7급	4	행정4
			8급	5	행정4, 행정/임기제 행정1
9급	1	행정1			
행정지원국	문화체육과	계		27	
		일반직	소 계	27	
			5급	1	행정1
			6급	6	행정4, 행정/시설1, 공업1
			7급	10	행정5, 시설2, 행정/임기제 행정2, 기계운영1
			8급	7	행정2, 행정/시설1, 방송통신1, 공업1, 기계운영1, 사무운영1
9급	3	행정1, 공업/임기제 공업1, 방송통신/임기제 방송통신1			

행정지원국	도서관과	계		23	
		일반직	소 계	23	
			5급	1	행정1
			6급	6	행정5, 행정/사서1
			7급	4	행정1, 사서2, 행정/사서1
			8급	7	사서2, 행정/사서3, 전산1, 공업1
9급	5	행정2, 사서3			
행정지원국	세무과	계		33	
		일반직	소 계	33	
			5급	1	행정1
			6급	6	행정/세무4, 세무2
			7급	12	세무8, 행정/세무3, 사무운영1
			8급	8	세무7, 행정/세무1
9급	6	행정1, 세무4, 행정/세무1			
행정지원국	민원지적과	계		24	
		일반직	소 계	24	
			5급	1	시설1
			6급	4	행정2, 시설2
			7급	7	행정4, 시설2, 행정/시설1
			8급	7	행정4, 시설3
9급	5	행정4, 시설1			
복지경제국	국 합계			116	
	복지지원과	계		20	
		일반직	소 계	20	
			4급	1	서기관1
			5급	1	행정1
			6급	4	행정2, 행정/사회복지1, 사회복지1
			7급	4	행정1, 사회복지3
	8급	4	행정1, 사회복지2, 행정/사회복지1		
	9급	6	행정1, 사회복지5		
	복지경제국	사회복지과	계		20
일반직			소 계	20	
			5급	1	행정1
			6급	5	행정2, 행정/사회복지1, 사회복지2
			7급	7	행정2, 사회복지2, 시설1, 행정/사회복지1, 사무운영1
			8급	1	행정1
9급	6	행정2, 사회복지3, 행정/사회복지1			

복지경제국	창조경제과	계		17	
		일반직	소 계	17	
			5급	1	행정1
			6급	4	행정4
			7급	7	행정5, 행정/입기제 행정1, 공업1
			8급	4	행정4
9급	1	행정1			
복지경제국	농수산과	계		19	
		일반직	소 계	19	
			5급	1	농업/해양수산1
			6급	4	농업2, 해양수산1, 행정/농업/해양수산1
			7급	6	행정1, 농업2, 해양수산1, 농업/수위/해양수산1, 수위1
			8급	6	시설2, 농업2, 행정/농업1, 농업/수위/해양수산1
9급	2	농업1, 해양수산1			
복지경제국	환경위생과	계		22	
		일반직	소 계	22	
			5급	1	행정/보건/환경1
			6급	4	보건2, 환경1, 행정/환경1
			7급	8	행정1, 보건4, 환경1, 공업/환경2
			8급	7	행정1, 보건2, 환경3, 시설1
9급	2	환경1, 보건1			
복지경제국	환경미화과	계		18	
		일반직	소 계	18	
			5급	1	행정1
			6급	4	행정2, 행정/환경1, 운전1
			7급	5	행정1, 행정/환경1, 환경1, 운전2
			8급	7	행정2, 행정/환경1, 운전4
9급	1	행정1			
건설도시국	국 합계		108		
	건설과	계		24	
		일반직	소 계	24	
			4급	1	기술서기관1
			5급	1	시설1
			6급	5	행정2, 시설2, 전기운영1
			7급	6	행정1, 시설4, 전기운영1
			8급	9	행정3, 행정/시설1, 시설4, 기계운영1
9급	2	행정1, 시설1			

건설도시국	안전정보과	계	22		
		일반직	소계	22	
			5급	1	행정1
			6급	5	행정1, 전산1, 방송통신1, 행정/시설1, 사무운영1
			7급	8	행정2, 시설1, 전산2, 방송통신2, 전화상담운영1
			8급	6	행정1, 시설1, 전산2, 방송통신2
		9급	2	방송통신2	
계	16				
건설도시국	도시행정과	일반직	소 계	16	
			5급	1	행정/시설1
			6급	4	행정1, 시설3
			7급	4	행정1, 시설2, 시설/임기제 시설1
			8급	5	행정1, 시설3, 행정/시설1
			9급	2	시설2
건설도시국	공원녹지과	일반직	계	13	
			소 계	13	
			5급	1	행정/녹지1
			6급	3	행정1, 녹지1, 행정/녹지1
			7급	6	행정1, 녹지5
			8급	2	녹지1, 농림운영1
9급	1	녹지1			
건설도시국	교통행정과	일반직	계	14	
			소 계	14	
			5급	1	행정1
			6급	4	행정2, 행정/시설1, 사무운영1
			7급	4	행정3, 시설1
			8급	4	행정3, 행정/세부1
9급	1	행정1			
건설도시국	건축주택과	일반직	계	19	
			소 계	19	
			5급	1	시설1
			6급	4	행정1, 시설3
			7급	7	행정2, 시설4, 사회복지1
			8급	6	시설6
9급	1	시설1			

【별표 2】

북구 의회사무과 지방공무원 정원표(제2조제2항 관련)

구분	직종	직급	정원	직렬
의회사무과	계		13	
	일반직	소 계	13	
		5급	2	행정2
		6급	2	행정2
		7급	3	행정3
		8급	4	행정2, 속기2
9급	2	행정1, 운전1		

【별표 3】

북구 보건소 지방공무원 정원표(제2조제3항 관련)

구분	직종	직급	정원	직렬
보건소	계		37	
	일반직	소 계	37	
		4급	1	기술서기관1
		5급	3	행정/보건/간호/의료기술1, 의무/임기제 의무2
		6급	6	행정1, 행정/간호/의료기술1, 보건/간호/의료기술3, 보건진료1
		7급	13	행정1, 보건1, 의료기술4, 간호4, 보건/약무1, 보건/간호1, 보건진료1
		8급	12	보건1, 보건/의료기술1, 간호3, 의료기술3, 보건/임기제 보건2, 공업1, 운전1
9급	2	운전1, 보건운영1		

【별표 4】

북구 동별 지방공무원 정원표(제2조제4항 관련)

구분	직종	직급	정원	직렬	
동	동 합계		81		
	농소1동	계	11		
		일반직	소계	11	
			5급	1	행정1
			6급	1	행정1
			7급	3	행정3
			8급	3	행정2, 사회복지1
9급	3	행정1, 행정/사회복지1, 사회복지1			
동	농소2동	계	12		
		소계	12		
		일반직	5급	1	행정1
			6급	1	행정1
			7급	2	행정2
	8급		5	행정4, 사회복지1	
9급	3	행정2, 사회복지1			
동	농소3동	계	12		
		소계	12		
		일반직	5급	1	행정1
			6급	1	행정1
			7급	3	행정2, 행정/농업1
	8급		5	행정4, 사회복지1	
9급	2	행정1, 행정/사회복지1			
동	강동동	계	8		
		소계	8		
		일반직	5급	1	행정/시설/농업/해양수산1
			6급	1	행정1
			7급	1	행정1
	8급		4	행정2, 행정/농업1, 사회복지1	
9급	1	행정1			
동	효문동	계	13		
		소계	13		
		일반직	5급	1	행정1
			6급	1	행정1
			7급	4	행정3, 사회복지1
	8급		4	행정4	
9급	3	행정1, 행정/사회복지1, 사회복지1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 도로보수 업무의 안전성 및 효율성 제고하기 위한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규칙」 개정에 따라 부서별 정원배정을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로보수업무 담당 인력 통합 운영을 위한 담당 부서 조정

나. 생활민원담당 이동(안전정보과 → 건설과)에 따른 부서별 정원 증감

- 건 설 과 : 22명 → 24명(증 2명)
 - 행정6급 +1, 행정/시설8급 +1
- 안전정보과 : 24명 → 22명(감 2명)
 - 행정6급 △1, 행정/시설8급 △1